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 결함을 시정조치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시정하지 않는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의 시정을 받아야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정조치계획의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는 내용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형식”을 각각 “제원관리번호”로 한다.

제7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귀책으로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제23호의 사항은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150조제1항제5호의4을 제5호의6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4 및 제5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업무

5의5.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에 관한 업무

제15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42조제3항”을 “제4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24) 기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기타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 등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될 것

7.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 중 24) 기타 나)의 경우 정기검사에 한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계획 및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0조제2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통지 및 공고된 시정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4. ~ 7. (생략) ③ ~ ⑤ (생략) 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u>형식</u> 및 제작연월일 2. ~ 7. (생략)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u>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합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는 내용</u>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① ----- ----- ----- ----- ----- ----- ----- -----. 1. ----- ----- <u>제원</u> <u>관리번호</u> -- 2. ~ 7. (현행과 같음) ② ----- ----- ----- ----- -----
---	--

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합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명칭, <u>형식</u> 및 제작연월일 2. ~ 6. (생략) ③ ~ ⑥ (생략)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생	----- ----- ----- -----. 1. ----- ----- <u>제원</u> <u>관리번호</u> --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u> <u>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귀책</u> <u>으로 제작결합의 시정조치 이</u> <u>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u> <u>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u> <u>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u> <u>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u> <u>유효기간을 연장할 것</u> ②·③ (현행과 같음)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현행
---	--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전
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
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

②

해당

하고, 제23호의 사항은 정기검

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3.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
작결함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법 제31
조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개
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다. 1. ~ 5의3. (생략) <u><신설></u> <u><신설></u> <u>5의4.</u> (생략) 6. ~ 9. (생략) ②·③ (생략)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1. ~ 1의5. (생략) 2. <u>제42조제3항</u>에 따른 자동차 제작자등의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2의2. ~ 7. (생략)	--. 1. ~ 5의3. (현행과 같음) <u>5의4.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업무</u> <u>5의5.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에 관한 업무</u> <u>5의6.</u> (현행 제5호의4와 같음) 6.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 ----- ----- -----. 1. ~ 1의5. (현행과 같음) 2. <u>제42조제3항 및 제4항</u>----- ----- ----- 2의2. ~ 7. (현행과 같음)
--	--